

(일본) Aichi Gakusen Univers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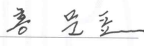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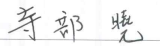
■ 오산대학교 - 아이치가쿠센 단기대학 교류 협약

양 기관은 호혜평등·우호협력의 정신 아래 대학 간 학술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 체결 (2007년 12월 3일)

■ 협약 주요내용

1. 유학생의 상호교환 (매년 3명, 1년)
2. 단기 어학연수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
3. 합작 교육 프로그램

■ 협약서

<p>오산대학교 학교법인 안조학원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서</p> <p>오산대학교 학교법인 안조학원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은, 양 교육기관간의 교육과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하는데 있어,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에 합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양 교육기관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교류를 실시한다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학생 교류 및 학점교류- 공동 연구, 강의 및 학술토의, 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및 직원의 교류- 도서관 자료 및 연구간행물의 교환을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환- 기타 협력사항의 교류2. 이 각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향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.3. 본 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, 수정 또는 종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. 각서호력의 종료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각서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4. 본 각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한다. 양 교육기관은 쌍방의 각서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하고, 각각 각서에 사인을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 <p>2007년 12월 3일</p> <p>오 산 대 학 학 장 홍 문 표 </p> <p>학 교 법 인 안 조 학 원 이 사 장 테라베 야키라 </p>	<p>오산대학교 학교법인 안조(安城)학원 아이치가쿠센(愛知學泉)단기대학과의 학술/문화교류에 관한 협정</p> <p>오산대학교 학교법인 안조학원이 경영하는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(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)은 호혜평등/우호협력의 정신 아래, 양 대학간의 학술/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.</p> <p>一. 교원의 교류</p> <p>□ 교환교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오산대학교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(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)은, 상호 회담에 의거하여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.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.2. 파견교원의 인선 및 시기는 받아들이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,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.3. ①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(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)에서 파견된 교원은 오산대학에서는 객원교원으로 대우를 받는다.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. ②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교원은 아이치가쿠센대학에서는 객원교원의 대우를 받는다.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.4. 교환교원의 교육활동/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쌍방은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. <p>二. 사무직원의 교류</p> <p>사무직원의 사무능력 향상을 위하여(단기간) 연수프로그램을 쌍방협의 후 기획하고,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三. 유학생의 교환</p> <p>1. 교비 유학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매년 유학생 1~2명을 서로 파견한다.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2. 유학생의 선발/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,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3.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(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)은 오산대학에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내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.4. ① 쌍방은 유학생의 학비/기숙사 비용을 면제하고, 국민건강보험 보험
--	--